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중앙지방협력회의 본격 시행에 따라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지방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방보조금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사회재난 상황관리를 위하여 종합상황실 상황관리에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 개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이라는 정부혁신의 방향 명확화를 위하여 디지털정부실 및 혁신조직국을 디지털정부혁신실 및 조직국으로 개편하되, 인력조정으로 1명(8급 1명)을 감축하며, 지역 청년의 지역 거주여건 조성, 지원사항 발굴,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지역활성화과를 지역청년정책과로 개편하는 한편, 범정부 전산서비스 장애 예방·대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을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업무효율화를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를 디지털정부정책국에서 공공서비스국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디지털정부실·혁신조직국”을 “디지털정부혁신실·조직국”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디지털정부실)”을 “(디지털정부혁신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디지털정부실”을 “디지털정부혁신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디지털정부정책국”을 “디지털정부정책국, 정부혁신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6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제99호부터 제10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5호부터 제36호까지를 각각 제16호부터 제2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7호부터 제73호까지를 각각 제62호부터 제9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8호부터 제6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6호”를 “제27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제37호부터 제47호”를 “제3항제62호부터 제7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제48호부터 제73호”를 “제3항 제73호부터 제107호”로 한다.

28. 정부혁신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과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29. 정부혁신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협력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87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59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643</u>		<u>1,648</u>	+5	
		·	·		·		
		·	·		·		
일반직 계			<u>1,601</u>		<u>1,606</u>	+5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총경 포함)			<u>1,532</u>		<u>1,537</u>	+5	
		·	·		·		
		·	·		·		

30. 정부혁신 관련 범정부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협의체 운영
31.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과 성과 관리·평가
32. 정부혁신 관련 교육·홍보, 변화관리와 우수사례 발굴·확산
33.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업무 총괄·지원
34.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평가, 우수사례 확산·전파 및 교육·홍보
35.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총괄·조정과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개선
36.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37. 행정절차제도의 운영 및 개선
38.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행정기관 간 협업제도 운영·개선
39.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40. 협업과제 중 시스템 연계·통합과 정보공유 관련 부처 간 업무조정 및 지원
41. 지식행정제도의 운영·대외협력
42.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 및 시스템의 운영·개선
43.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개선
44. 행정사 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지원
45. 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
46.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47.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과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48. 민원사무 처리 상황, 운영실태의 확인·점검 및 평가
49. 통합전자민원창구 관리·운영과 전자민원 공통기반서비스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50. 수혜자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수립
5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관련 평가와 개선권고 등에 관한 사항
53.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54. 업무관리시스템 및 정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개선
55. 문서·관인과 정책실명제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
56.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 업무의 운영 지원
57. 국민의 정책 과정 참여 기획·홍보 및 제도화 연구
58. 국민참여를 통한 공공정책과 서비스 과제의 발굴·관리
59. 온라인 국민 참여 촉진·확산과 국민디자인단의 운영 지원
60. 공무원 제안 제도와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개선
61. 생활공감정책의 추진과 소관 생활공감정책 관련 모니터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 ⑤ 정부혁신국장은 제3항제28호부터 제61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

<u>관한 사항</u> 46. ~ 58. (생략) ④ ~ ⑤ (생략) ⑥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제3항제41호부터 제5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65조(한시정원) ① (생략) <u><신 설></u> ③ (생략)	45. ~ 57. (현행 제46호부터 제58호까지와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 제57호까지의 ----- -----. 제65조(한시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범정부 전산서비스 장애 예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③ (현행과 같음)
--	--

원	
33. 공무원 제안 제도와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개선	<삭 제>
34. 생활공감정책의 추진과 소관 생활공감정책 관련 모니터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삭 제>
35. ~ 51. (생략)	1. ~ 17. (현행 제35호부터 제51호까지와 같음)
제14조의3 ① ~ ② (생략)	제14조의3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1. ~ 14. (생략)	③ 1. ~ 14. (현행과 같음)
15. 지역거점별 소통과 협력을 위한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15. 행정안전부 소관 일자리창출 총괄 지원
16. 지역 생활권 단위 활성화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16. 지역고용증대 및 실업대책의 지원
17. ~ 18. (생략)	17. ~ 18. (현행과 같음)
19. 정보화마을의 기획·개선	19. <삭제>
20. ~ 28. (생략)	19. ~ 27. (현행 제20호부터 제28호까지와 같음)
제15조 ① ~ ② (생략)	제15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1. ~ 42. (생략)	③ 1. ~ 42. (현행과 같음)
43. 행정안전부 소관 일자리창출 총괄 지원	43. 지역거점별 소통과 협력을 위한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44. 지역고용증대 및 실업대책의 지원	44. 지역 생활권 단위 활성화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5.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지역일자리사업의 추진 및 평가에	45. <삭제>

를 분장한다.

제13조의 제목 “(혁신조직국)”을 “(조직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제1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5호부터 제51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부터 제3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조직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4조의3제3항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0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제19호부터 제27호까지로 한다.

15. 행정안전부 소관 일자리창출 총괄 지원

16. 지역고용증대 및 실업대책의 지원

제15조제3항 제43호 및 제4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6호부터 제58호까지를 각각 제45호부터 제5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8호”를 “제57호”로 한다.

43. 지역거점별 소통과 협력을 위한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44. 지역 생활권 단위 활성화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6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범정부 전산서비스 장애 예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별표 1 중 총계 “1,643”을 “1,648”로 하고, 일반직 계 “1,601”을 “1,60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총경 포함) “1,532”를 “1,537”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영과 전자민원 공통기반서비스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u>	
23. <u>수혜자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u>	<삭 제>
24.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수립</u>	<삭 제>
25.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 관련 평가와 개선권고 등에 관한 사항</u>	<삭 제>
26. <u>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u>	<삭 제>
27. <u>업무관리시스템 및 정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개선</u>	<삭 제>
28. <u>문서·관인과 정책실명제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u>	<삭 제>
29. <u>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 업무의 운영 지원</u>	<삭 제>
30. <u>국민의 정책 과정 참여 기획·홍보 및 제도화 연구</u>	<삭 제>
31. <u>국민참여를 통한 공공정책과 서비스 과제의 발굴·관리</u>	<삭 제>
32. <u>온라인 국민 참여 촉진·확산과 국민디자인단의 운영 지</u>	<삭 제>

<u>선</u>	
<u>11.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u>	<u><삭 제></u>
<u>행정기관 간 협업제도 운영·</u>	
<u>개선</u>	
<u>12.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지</u>	<u><삭 제></u>
<u>원에 관한 사항</u>	
<u>13. 협업과제 중 시스템 연계·</u>	<u><삭 제></u>
<u>통합과 정보공유 관련 부처</u>	
<u>간 업무조정 및 지원</u>	
<u>14. 지식행정제도의 운영·대외</u>	<u><삭 제></u>
<u>협력</u>	
<u>15.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 및</u>	<u><삭 제></u>
<u>시스템의 운영·개선</u>	
<u>16.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u>	<u><삭 제></u>
<u>운영·개선</u>	
<u>17. 행정사 제도의 연구·개선</u>	<u><삭 제></u>
<u>및 운영·지원</u>	
<u>18. 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u>	<u><삭 제></u>
<u>19.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u>	<u><삭 제></u>
<u>기본계획의 수립·시행</u>	
<u>20.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u>	<u><삭 제></u>
<u>· 개선과 행정기관의 민원처</u>	
<u>리 우수사례의 발굴·확산</u>	
<u>21. 민원사무 처리 상황, 운영실</u>	<u><삭 제></u>
<u>태의 확인·점검 및 평가</u>	
<u>22. 통합전자민원창구 관리·운</u>	<u><삭 제></u>

[별표 5]

행정안전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65조 관련)

1. 제65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6급 이하	1

2. 제65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3월 31일)

총계	3
일반직 계	3
4급 또는 5급 이하	3

3. 제65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2월 28일)

총계	2
일반직 계	2
6급 이하	2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하부조직) ① (생략) ② 행정안전부에 운영지원과·디지털정부실·혁신조직국·경찰국·지방행정국·자치분권국·균형발전지원국·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둔다. ③ (생략)	제4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 디지털정부혁신실·조직국----- ----- ----- -----.
제12조(디지털정부실) ① 디지털정부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디지털정부실에 디지털정부정책국, 공공데이터국 및 공공서비스국을 두되,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5. (생략) 16. ~ 24. (생략)	제12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① 디지털정부혁신실----- ----- -----. ② ----- 디지털정부정책국, 정부혁신국----- ----- ----- -----. ③ ----- --.
<신설>	28. 정부혁신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과 종합계획의 수립

다. 1. 정부혁신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과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 <삭제>
2. 정부혁신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협력	<삭제>
3. 정부혁신 관련 범정부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협의체 운영	<삭제>
4.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과 성과 관리·평가	<삭제>
5. 정부혁신 관련 교육·홍보, 변화관리와 우수사례 발굴·확산	<삭제>
6.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업무 총괄·지원	<삭제>
7.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평가, 우수사례 확산·전파 및 교육·홍보	<삭제>
8.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총괄·조정과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개선	<삭제>
9.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삭제>
10. 행정절차제도의 운영 및 개	<삭제>

<u><신 설></u>	60. 공무원 제안 제도와 국민 제		· 추진
	안 제도의 운영 · 개선	<u><신 설></u>	29. 정부혁신에 관한 국제기구
<u><신 설></u>	61. 생활공감정책의 추진과 소	<u><신 설></u>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 · 협력
	관 생활공감정책 관련 모니터	<u><신 설></u>	30. 정부혁신 관련 법정부적 네
37. ~ 73. (생 략)	단의 구성 · 운영 및 지원	<u><신 설></u>	트워크의 구축과 협의체 운영
	62. ~ 98. (현행 제37호부터 제	<u><신 설></u>	31.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 ·
④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은 제3	73호까지와 같음)	<u><신 설></u>	선정, 추진상황 확인 · 점검과
항제1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	④ -----	<u><신 설></u>	성과 관리 · 평가
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 제27호-----	<u><신 설></u>	32. 정부혁신 관련 교육 · 홍보,
<u><신 설></u>	-----.	<u><신 설></u>	변화관리와 우수사례 발굴 ·
	⑤ 정부혁신국장은 제3항제28	<u><신 설></u>	확산
⑤ 공공데이터국장은 제3항제3	호부터 제61호까지의 사항에 관	<u><신 설></u>	33.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7호부터 제47호까지의 사항에	⑥ ----- 제3항제62	<u><신 설></u>	업무 총괄 · 지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호부터 제72호-----	<u><신 설></u>	34.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⑥ 공공서비스국장은 제3항제4	-----.	<u><신 설></u>	관련 과제 발굴 · 평가, 우수사
8호부터 제73호까지의 사항에	⑦ ----- 제3항제73	<u><신 설></u>	례 확산 · 전파 및 교육 · 홍보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호부터 제107호-----	<u><신 설></u>	35.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
제13조(혁신조직국) ① 혁신조직	-----.	<u><신 설></u>	계획의 수립 · 총괄 · 조정과
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	제13조(조직국) ① 조직국장은 고	<u><신 설></u>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개선
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u><신 설></u>	36.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	무원으로 보한다.	25. ~ 36. (생 략)	· 개선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u><삭 제></u>	<u><신 설></u>	사항
무원으로 보한다.	② -----		16. ~ 27. (현행 제25호부터 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36호까지와 같음)
			37. 행정절차제도의 운영 및 개

<신 설>	38.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행정기관 간 협업제도 운영 · 개선
<신 설>	39.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지 원에 관한 사항
<신 설>	40. 협업과제 중 시스템 연계 · 통합과 정보공유 관련 부처 간 업무조정 및 지원
<신 설>	41. 지식행정제도의 운영 · 대외 협력
<신 설>	42.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 및 시스템의 운영 · 개선
<신 설>	43.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 · 개선
<신 설>	44. 행정사 제도의 연구 · 개선 및 운영 · 지원
<신 설>	45. 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
<신 설>	46.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신 설>	47.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 · 개선과 행정기관의 민원처 리 우수사례의 발굴 · 확산
<신 설>	48. 민원사무 처리 상황, 운영실 태의 확인 · 점검 및 평가
<신 설>	49. 통합전자민원창구 관리 · 운 영과 전자민원 공통기반서비

<신 설>	스의 개발 · 보급에 관한 사항
<신 설>	50. 수혜자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신 설>	5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원 문정보공개 관련 제도 및 정 책의 수립
<신 설>	5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 관련 평가와 개선권고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53.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54. 업무관리시스템 및 정부전 자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 · 개 선
<신 설>	55. 문서 · 관인과 정책실명제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
<신 설>	56.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 관 업무의 운영 지원
<신 설>	57. 국민의 정책 과정 참여 기획 · 홍보 및 제도화 연구
<신 설>	58. 국민참여를 통한 공공정책 과 서비스 과제의 발굴 · 관리
<신 설>	59. 온라인 국민 참여 촉진 · 확 산과 국민디자인단의 운영 지 원